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생태 체험학습장 가이드

## 운영·관리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 안

의 안 번 호	214
------------	-----

제출연월일 : 2013.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의결주문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 위탁에 동의한다.

### 2. 제안이유

○ 2009. 7월 및 2010. 7월 각각 개관하여 일반에 관람되고 있는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과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자리 이동 등 전문성, 책임성 부족 등으로 운영비 대비 수입비율이 3년간 평균 각각 약15.9%, 63.6%에 그치고 있어 군에서 직접운영하기에는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과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위탁사무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운영·관리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 마하생태관광지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 □ 위탁시설 및 규모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 시설규모 : 1동 923.36㎡(연면적 1,649,64㎡, 지하1층,지상2층)
  - 대지 10,350㎡
- 마하생태관광지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 주차장 6,700㎡(122대)
  - 공중화장실 1동 65.1㎡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 12명
  - 도선운영 2, 가이드 7, 매표 및 운영 3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지방계약법' 적용

□ **위탁계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이내

□ **위탁운영관리비** : 연 492,360천원 (2012.09. 원가계산용역 결과)  
※ 연간 단위로 매년 재산정

## 4. 첨부자료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 1부.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

-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유역의 자연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생태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된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과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과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고자 함.

## 1. 위탁 대상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번지 일원, 문희길 63번지 일원
- 위탁대상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운영·관리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 마하생태관광지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 위탁시설 및 규모
  - 총인원 16명(운영총괄 1, 민물고기생태관 3, 백룡동굴학습장 12)  
→ 2~3년간 직영운영하면서 도출해 낸 인원으로 가장 적합한 인원 구성으로 판단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 건축면적 923.36㎡(연면적 1,649.64㎡, 지하1층, 지상2층)
    - 대지 10,350㎡
  - 마하생태관광지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 주차장 6,700㎡(122대), 공중화장실 1동 65.1㎡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 12명
    - 도선운영 2, 가이드 7, 매표및운영 3

## 2.

## 민간위탁의 추진

### □ 위탁사무의 범위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
  - ※ 백룡동굴(천연기념물제260호)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운영·관리는 군의 직영관리가 유리하고, 민간위탁시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마하생태관광지 본동 지구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지역특화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
- 주변 관광자원 연계 마하생태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별도로 위탁하는 업무

###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친절한 관광 서비스 제공 및 위탁을 통한 효율적 시설관리
- 민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근무자의 효율적 복무관리 및 탄력적 운영
  - 행정기구 축소, 효율적 인원 배치
  -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민물고기 관리, 시설관리, 제조작업 등 주변정비, 울타리 정비, 조경수관리, 주차장 관리 등)
  -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

### □ 위탁 조건

- 위탁계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이후 운영성과 분석하여 위탁 지속여부 판단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및 '지방계약법' 적용
- 민간위탁운영비 : 연 492,360천원 (2012.09. 원가계산용역 결과)

-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협약시 계약심사하여 세부조정
- 관람료 수입은 운영·관리비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관람료는 현행과 같이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민간위탁운영비 지급.

예) 이호석문학관 민간위탁, 상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 등

- 운영관리비 지급 : 연간 총액계약 후 매분기 분할 지급,  
차년도 운영비는 '평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및 소비자물가지수 등 반영

○ 관람료 : 군 세외수입 일일납부

○ 수입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고

- 수입금 일일납부 확행
- 지급기준, 지출증빙서류 비치등 준수
- 근무자 채용, 복무관리등은 「근로기준법」, 「평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규정」 등 준용으로 공정성, 객관성 제고

○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근로계약 승계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근무자는 근무시간내 군 소속 직원의 지시, 통제에 따름.

#### □ 수탁자의 선정 및 협약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및 '지방계약법' 적용

○ 협약체결

-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또는 단체)와 평창군수간 체결
- 체결된 협약서는 공증 후 상호 보관
- 주요내용 : 위탁대상시설, 위탁사무의 종류, 시설물·인력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

○ 수탁자 조건 이행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협약의 해지), 제12조 (지도·감독) 규정 준수 등

- 기타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관련법규 준용
- 인계 인수 : 인계·인수서 작성은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제 시 시설 및 기자재, 물품 등의 원상복구, 반환에 관한 내용을 확실하게 작성

#### □ 사후관리

-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관리, 지도·감독 기능 수행
- 매년 말 운영 성과 분석하여 피드백 : 시설물 이용현황, 수지분석, 문제점 및 대책, 개선·건의사항등

### 3. 위탁 근거 및 사무의 기준

#### □ 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0조

#### □ 위탁사무의 기준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4. 민간위탁의 장.단점

#### □ 장 점

- 전문적, 효율적, 탄력적 운영
- 운영관리 비용 최소
  - 노무비 적용 유형별 총괄 원가비교

구 분	현행 인건비적용시	제조부문 시중노임 적용시	직영운영관리시
2012년 기준 원가계산용역결과	<b>492,360천원</b>	639,831천원	633,098천원

※ 2012.09.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학습장 가이드운영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발취

#### □ 단 점

- 수탁자에 따라 합리성, 법적합성, 투명성 불확실
- 수탁자 부실운영시 신속한 관리체계 전환 어려움

### 5. 향후 추진일정

- 군의회 동의 및 2013. 제1회추경 예산확보 : 2013. 4월말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2013. 5월초
- 위탁운영자 신청서접수 : 2013. 5월초
- 수탁자 심사 및 선정 : 2013. 5월중
-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13. 5월말

붙 임 : 1. 총괄원가 비교표  
2. 시설 및 운영현황  
3. 관련법규 1부.

【 붙임 1 】

## 총괄 원가 비교

[ 2012.09.원가계산용역 결과]

(단위 : 원)

구 분		현행 인건비 적용	제조 부문 시중 노임 적용	현행 직영 운영 관리	비 고	
순관리운영원가	인 건 비 (A)	직접인건비	22,381,186	31,201,533	39,342,102	
		간접인건비	-	-	-	
		소계	22,381,186	31,201,533	39,342,102	
	고 정 경 비 (B)	보험료	2,163,043	3,015,493	2,563,467	
		복리후생비	1,823,333	1,823,333	1,820,832	
		소계	3,986,376	4,838,826	4,384,299	
일반관리비(C)		1,318,378	1,802,017	2,186,320		
이 윤(D)		2,768,594	3,784,237	-		
고정비 소계		30,454,534	41,626,613	45,912,721		
변 동 경 비 (E)	사무관리비		1,380,998	1,380,998	1,380,998	
	공공운영비		4,656,479	4,656,479	4,656,479	
	재료비		808,013	808,013	808,013	
	변동경비계		6,845,490	6,845,490	6,845,490	
합계		37,300,024	48,472,103	52,758,211		
부가가치세(E)		3,730,002	4,847,210	-		
월 계		41,030,026	53,319,313	52,758,211		
년 계		492,360,312	639,831,756	633,098,532		

【붙임 2】

## 시설 및 운영현황

### 1. 시설 현황

□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 위치 :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번지
- 시설규모 : 건축면적 923.36㎡(연면적 1,649,64㎡, 지하1층,지상2층), 대지 10,350㎡
- 시설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업기간 : 2003. 02 ~ 2009. 07. 03.(개관)
- 사업비 : 9,050,백만원(국4,420, 도 1,974, 군 2,656)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 위치 : 평창군 미탄면 문화길 63번지
- 시설규모 : 진입로 데크 400m, 동굴내부 관람로 700m, 주차장 1식, 관리사무소(경량철골조) 1동 등
- 사업기간 : 2005. 06. ~ 2010. 07. 20.(개관)
- 사업비 : 5,431백만원(국2,100, 도 720, 군 2,611)

□ 평창동강공중화장실 및 관광지 주차장

- 위치 :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36-8번지 일원
- 시설규모 : 공중화장실 1동 65.1㎡(2009. 1월 ~ 4월)  
주차장 6,700㎡(122대)

### 2. 운영 현황

□ 인력현황

(단위 : 명, 2013.2.28.현재)

구분	계	직원	기간제 근로자			비고
			소계	대표 및 운영	도선 및 가이드	
합계	20	5	15	6	9	
민물고기생태관	6	3	3	3		
백룡동굴학습장	14	2	12	3	9	

□ 운영실적

(단위 : 명, 천원, %)

구 분	연도	관람객	수입금	운영비	수입대비 운영비율	비 고
민물고기 생태관	합계	43,918	49,543	210,571		'13년예산 130,988천원
	2010	15,134	16,234	105,637	15.3	
	2011	14,721	16,699	105,154	15.9	
	2012	14,063	16,610	100,135	16.6	
백룡동굴 학습장	합계	38,775	432,319	706,829		'13년예산 374,730천원
	2010	9,404	111,322	140,504	78.1	
	2011	13,685	153,816	247,442	62.1	
	2012	15,686	167,181	330,078	50.6	

□ 예산 및 지출현황

[민물고기생태관]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예 산 액			
		2011	2012	2011	2012	2013	
계		105,154	100,135	114,231	125,200	130,988	
인 건 비		29,085	31,080	29,085	32,580	36,234	
사무관리비		13,276	13,710	13,450	15,534	17,068	
공 공 운 영 비	소 계	55,714	48,568	61,696	61,886	62,686	
	전기요금	37,104	28,099	공공요금 및제세 54,096	공공요금 및제세 53,486	공공요금 및제세 43,200	
	환경부담금	151	142		연료비 4,000	연료비 4,800	연료비 5,600
	전화,인터넷 요금등	750	725	시설장비 유지비 3,600		시설장비 유지비 3,600	시설장비 유지비 13,886
	유류대금	4,306	6,065		시설장비 유지비 3,600	시설장비 유지비 3,600	시설장비 유지비 13,886
	시설장비유지 비(수선등)	4,853	6,444			시설장비 유지비 3,600	시설장비 유지비 3,600
	대행용역(전기, 승강기등)	8,550	7,093				
재료비		7,079	6,777	10,000	15,200	15,000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예 산 액			비 고	
	2011	2012	2011	2012	2013		
계	247,443	330,078	258,656	351,330	374,730		
인 건 비	191,760	231,660	191,775	240,340	254,750		
사무관리비	21,267	24,289	22,481	31,600	27,400		
공 공 운 영 비	소 계	24,417	27,751	34,400	33,000	40,800	
	전기요금	12,621	13,361	공공요금 및제세 28,400	공공요금 및제세 25,800	공공요금 및제세 19,200	
	환경 부담금	44	40		연료비 6,000	연료비 7,200	
	전화,인터 넷 요금등	3,318	1,378	시설장비 유지비 12,000			
	유류대금	6,258	10,005				
	시설장비 유지비 (수선등)	2,176	2,967				
재료비	-	3,182		3,190			
배상금					1,000		
기타부담금 (문화재기금)	-	32,000		32,000	32,000		
자산취득비	9,999	11,196	10,000	11,200	18,780	동굴복, 물품구입	

## 【붙임 3】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하거나 위탁 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 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 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 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 에 지원할 수 있다.